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이행실태 보고서

(점검대상기간 : 2019.01.01~2019.12.31)

2020.01.31

NICE신용평가(주)(이하 “NICE신용평가”)는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선도적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신용평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 등 신용평가업 영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원칙의 준수를 위해 기본적인 덕목과 행동양식을 명문화한 최상위 규정인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2006년 5월 제정하였고, 이후 수 차례(2010년 1월, 2013년 11월, 2020년 1월)에 걸쳐 개정해 왔습니다. 해당 사항은 NICE신용평가 홈페이지(<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되어 있으며, NICE신용평가는 이를 구체화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04년 12월 제정하고 2008년 5월 및 2015년 3월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게 적용을 권고한 신용평가사에 대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에 담긴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공정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신용등급 이용자(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투자자 등)에 대한 책임, 그리고,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동 Code of Conduct의 준수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내부교육과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1년간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의 항목별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밝히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점검은 2020년 1월 15일 개정되기 이전의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기준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부터는 개정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기준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성실성

A. 신용평가 과정의 품질

■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의 수립과 적용

- NICE신용평가는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방법론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금융상품 및 업종에 대한 평가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 점검대상기간 중 신용평가일반론을 조정하면서 3개 부문(신용평가 개요, 신용평가 체계, 신용평가 절차)을 개정하고, 1개 부문(리츠 신용평가)을 제정하였으며, 1개 부문(벤처기업 신용평가)을 폐지하였습니다. 산업별 평가방법론은 9개 부문(조선, 석유화학, 메모리반도체, 식품(곡물가공 통합), 소매유통, 금융일반기업, 부동산신탁, 저축은행, 신용카드)을 개정하였습니다. SF평가방법론은 기존 방법론 중 5개 부문(SF 신용평가 일반론, CMBS, 기업매출채권, 일반담보부채권, 유동화익스포저)을 개정하였으며, PF평가방법론 1개 부문(부동산 PF 평가방법론) 및 공공부문 신용평가방법론 1개 부문(정부신용평가)을 개정하였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방법론을 신규로 제정하거나 기존 신용평가방법론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개정안을 신용평가에 직접 적용하려는 날로부터 1개월 이전에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최종본은 대외기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과 당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방법론 공시 현황(2019.1.1~12.31)]

번호	구분	신용평가방법론	공시일	비고
01	신용평가일반론	리츠 신용평가	2019.06.28	제정
02	신용평가일반론	개관3. 신용평가 절차	2019.07.30	개정
03	신용평가일반론	개관1. 신용평가 개요	2019.07.30	개정
04	신용평가일반론	개관2. 신용평가 체계	2019.11.19	개정
05	신용평가일반론	벤처기업 신용평가	2019.11.19	폐지
06	산업별 평가방법론	조선	2019.12.31	개정

07	산업별 평가방법론	석유화학	2019.12.31	개정
08	산업별 평가방법론	메모리반도체	2019.12.31	개정
09	산업별 평가방법론	식품(곡물가공 통합)	2019.12.31	개정
10	산업별 평가방법론	소매유통	2019.12.31	개정
11	산업별 평가방법론	금융일반기업	2019.01.25	개정
12	산업별 평가방법론	부동산신탁	2019.01.25	개정
13	산업별 평가방법론	저축은행	2019.03.08	개정
14	산업별 평가방법론	신용카드	2019.03.08	개정
15	공공부문평가방법론	정부신용평가	2019.12.31	개정
16	SF평가방법론	SF 신용평가 일반론	2019.12.31	개정
17	SF평가방법론	CMBS	2019.12.31	개정
18	SF평가방법론	기업매출채권	2019.12.31	개정
19	SF평가방법론	일반담보부채권	2019.12.31	개정
20	SF평가방법론	유동화익스포저	2019.12.31	개정
21	PF평가방법론	부동산 PF 평가방법론	2019.12.31	개정

■ 신용평가 과정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ICE신용평가의 모든 신용등급 결정 권한은 내규에서 정한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서 보유하며,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평가업무규정, 신용평가업무세칙, 신용등급평정위원회운영지침 등의 성문화된 내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뢰성 및 적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의 적정성 및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직원을 신용평가전문인력 및 평정위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평정기록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연속성을 제고하고 신용평가 과정에 편견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평가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별 신용평

가 수행 시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 실무팀과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규정, 신용평가업무세칙, 정기평정실시지침, 내부심사운영지침 등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의 공시 이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 시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환경변화가 기업의 신용위험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 스페셜리포트, 마켓코멘트, 그룹분석보고서 등을 공시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신용등급에 대한 사후관리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및 관련 내규에 규정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와 NICE신용평가 임직원은 신용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에 특정 신용등급을 부여하겠다는 직·간접적인 언급 및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부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준법감시부서를 두어 Code of Conduct, 관련 내규 및 법규 등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준법감시부서는 관련 준법감시규정 및 세부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A. 총칙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NICE신용평가, 평가대상법인, 투자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경제적, 정치적, 기타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방법론, 신용평가기준,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

- NICE신용평가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335조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제7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제3항에 따라 NICE신용평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서 교부 시 신용등급을 공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NICE신용평가가 평가대상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반대로 평가대상법인이 NICE신용평가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기재한 “NICE신용평가(주)의 발행사에 대한 신용평가 적정 여부”를 함께 발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영업조직과 신용평가조직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조직 간 정보 및 인사의 교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신용평가 계약의 체결 및 평가 의뢰·권유 등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영업관리를 담당하며, 기업RM본부, 금융RM본부, SF RM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평가조직은 평가정책본부, 기업평가본부, 금융평가본부, SF평가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평가정책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각 평가본부의 본부장 및 부서장, 그리고 평가정책본부 전문평정위원을 포함한 신용평가전문인력으로서 평가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등급제시부서 소속인원 제외)가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조직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용평가 과정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용등급평정위원회의 참여자 전원이 직접 평가대상법인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용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담당직원에 대한 급여정책이 신용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용평가 담당직원의 보수가 신용평가등급의 결정, 평가수수료 등 평가대상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도록 하여, 신용평가 담당직원은 개별 직원이 창출한 수익에 근거하여 평가되거나 보상받지 아니합니다.

■ 이해상충문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사업부문과 비신용평가 사업부문 간에 존재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11월에 한국 신용정보(주)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사업과 그 부수업무인 투자평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예산수립 등에 있어 신용평가사업부문과 투자평가사업부문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수수료 체계를 공개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서비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평가수수료의 평가대상법인으로부터 수취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법인과 관련한 신용평가계약 및 비평가용역계약 실적과 관련한 최근 2년간 내역(신용평가용역과 비평가용역 건수 및 수수료 총액), 평가대상법인이 기업집단일 경우 해당 부문 전체 수수료 중 그 기업집단의 수수료 비중, 평가대상법인의 다른 신용평가 및 비평가용역 수행 여부, 신용평가용역 관련일자(평가개시일, 계약체결일, 평가완료일) 등을 평정요지에 기재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시내용 확대를 통해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일체의 영업활동이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실무와 수수료 관련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전문인력은 계약체결, 수수료 및 매출채권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는 영업 관련부서에서 전담하도록 내규에 명시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준법감시조직으로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실을 두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의사결정의 적법성,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감시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평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법규 및 내규준수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보고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의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및 이해상충관리를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존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준법감시조직과는 별도로 신용평가사업과 타 업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를 관리하는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이해상충관리위원회세칙 및 이해상충관리위원회운영지침 등 내규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관리위원회는 주로 부서(본부) 간 이해상충여부의 심의,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에 대한 심의, 기타 준법감시부서에서 상정한 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에게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 및 거래내역”을 준법감시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부서는 신고 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또는 보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관련 법규 및 내규준수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자 전원에게 평가대상법인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의 평정위원회 참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배제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형제자매], 직전 근무기업, 편익수령 등으로 인해 신용평가전문인력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NICE신용평가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기존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직접 내부 전산시스템에 상시 등록하도록 하고, 매 분기마다 상기 내용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임직원의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의 수령 및 제공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를 내규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평정위원회 참여자 전원에 대해 편익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는 한편 신용평가업무 관련 편익제공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에 참여하였던 신용평가전문인력이 평가대상법인 또는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전문인력이 최근 2년간 수행하였던 관련 신용평가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투자자, 발행자 및 자본시장에 대한 의무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전자우편서비스, 간행물 등을 공시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평가방법론, 장기신용등급평가 결과분석, 산업위험평가, 연간부도율,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장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인 평가방법론, 등급 및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실적서 등의 자료를 모두 홈페이지 (<http://www.nicerating.com>)에 공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공시하기 전에 평가대상법인에게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법인이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소명자료를 수령하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재심사는 최종 필요자료의 접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급감시 대상으로 등재하는 경우, 등급철회, 취소의 경우와 중요 신용사건 발생으로 신속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재심사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관련 정보가 더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여러 기관에 공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정한 신용평가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 공시를 기한 내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B. 비밀정보의 관리

- NICE신용평가는 평가기업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신용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 계약 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밀 유지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제공된 기밀정보는 별도 관리하고, 평가대상법인이 제공한 정보는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는 임직원이 신용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법인이 제공한 정보를 개인적 이해관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와 관련된 자의 배우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Code of Conduct 공시 및 적용

-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을 충족한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은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준법감시부서는 동 내용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첨부] 최근 5년간 평가방법론 제정, 개정 현황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용평가 일반론	개관 1. 신용평가 개요	개정			개정	개정
	개관 2. 신용평가 체계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관 3. 신용평가 절차	개정			개정	개정
	기초 1. 신용등급 결정	개정				
	기초 2. 사업위험 평가	개정				
	기초 3. 산업위험 평가	제정				
	기초 4. 재무위험 평가	개정			개정	
	기초 5. 계열관계 반영	개정				
	기초 6. 채무특성 반영	개정			개정	
	기초 7. 단기등급 평가	개정			개정	
	제 3 자 요청 평가				제정	
	기업집단내 소속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사례가 발생시 신용평가			제정		
	신종자본증권 평가방법론	개정	개정		개정	
	지주회사 신용평가		개정			
	리츠 신용평가					제정
	경기순환과 신용등급			개정		
	기업규모와 신용평가			개정		
	M&A 와 신용평가			개정		
	자산유동화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개정		
	Bank Loan 신용평가			개정		개정
벤처기업 신용평가						폐지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1	제정				
	산업별 평가방법론-총론 2	제정	개정			
	자동차	개정			개정	
	자동차부품	개정				
	조선	개정				개정
	철강	개정			개정	
	비철금속	개정				
	정유	개정				
	석유화학	개정				개정
	제지	개정				
	화학섬유	개정				
	제약	개정			개정	
	통신서비스	개정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5	2016	2017	2018	2019
산업별 평가방법론 (비금융)	디스플레이패널	개정			개정	개정 ^(주)
	메모리반도체	개정				
	전선	개정				
	SI	개정			개정	
	곡물가공	개정				
	식품가공	개정				
	외식	제정	개정			
	주류	개정				
	의류	개정				
	건설	개정			개정	
	시멘트	개정				
	해상운송	개정				
	항공운송	개정			개정	
	소매유통	개정				
	발전	개정			개정	
	도시가스	개정				
	방송서비스	개정				
	호텔	개정			개정	
기타 서비스업				제정		
비금융일반기업	개정					
산업별 평가방법론 (금융)	은행	개정		개정		개정
	증권	개정	개정			
	생명보험	개정			개정	
	손해보험	개정			개정	
	신용카드	개정				
	할부리스업	개정			개정	
	저축은행	개정				
	부동산신탁업	제정				
	대부업			제정		
	금융일반기업	제정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SF 신용평가 일반론	개정				개정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개정		개정		
	Synthetic CDO	개정		개정		
	부동산 PF 유동화	개정				
	ABCP	개정				
	소비자금융채권	개정			개정	

구분	유효 기준 방법론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화금융 평가방법론	MBS	개정				
	CMBS	개정				개정
	신용카드 매출채권	개정				
	자산유동화에 있어 Master Trust 방식의 이해	개정				
	기업 매출채권	개정			개정	개정
	항공기금융채권				제정	
	일반 담보부채권	개정				개정
	리스채권	개정				
	SLBS	개정				
프로젝트금융 평가방법론	유동화 익스포져	개정				개정
	커버드본드(Covered bond)	개정				
	Project Finance 부동산 PF 평가방법론					개정
	유료도로 회원제골프장 산업단지 발전소 오브젝트금융(Object Finance)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정부신용평가	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제정				
	공기업 총론	제정				
	비금융 공기업	제정				
펀드 신용평가	단기금융/채권형 집합투자기구 평가방법론	개정				
	펀드신용평가 일반론	제정				

주) 곡물가공 및 식품가공은 2019년 12월 31일 식품 신용평가방법론으로 통합 및 개정됨